

시 민

문서번호	사회적경제과-2817
결재일자	2013.3.1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★주무관	사회적기업육성팀장	사회적경제과장	고용노동정책관	경제진흥실장
협 조				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2013년 제1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

2013. 3.

서울특별시
[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]

사전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전 문 가 : 유 ■ (심사위원회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옴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■ (사회적기업육성법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■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■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■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■ (고용노동부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■ (서울권역 지원기관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관 계 기 관 : 유 ■ (고용노동부, 자치구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■ (서울권역 지원기관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
2013년 제1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

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여러 분야의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인증 전환이 가능한 역량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I 추진개요

□ 추진근거

- 사회적기업 육성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
-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
-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<2013. 고용노동부>
- 20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계획

□ 추진방향

- 지역사회에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갖춘 역량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
- 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건실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 위주 선정
- 이미 시장에서 넓게 형성된 영역을 수행하는 기업보다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기업 신규 발굴

II 그간의 추진실적

- 2년간('11~'12년) 총 73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

구분	계	일자리제공형	서비스제공형	지역사회공헌형	혼합형	기타형
계	73	25	9	2	11	25
2012년	67	21	8	2	11	25
2011년	6	5	1	-	-	-

Ⅲ

세부추진계획

1 지정개요

□ 추진내용

-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·접수 및 심사·지정

□ 지정요건

- 조직형태 :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, 비영리단체(사업단) 등
 - ※ '12.12.01부터 『협동조합기본법』이 시행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조직형태로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가 추가
- 사회적 목적 실현

유형	사회적목적 실현내용	판단기준
일자리 제공형	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	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% 이상
사회서비스 제공형	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	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
지역사회 공헌형	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	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20% 이상
혼합형	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	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
기타형	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지원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 위원회에서 판단	

※ 정관이나 규약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“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”는 조항 명시

○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

- 유급근로자(최소 1인 이상)을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
 - ▷ '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'은 적용하지 않으며,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
 - ※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
 - ▷ 유급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, 파트타임 근로자 등이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에 해당
 - ※ 유급형태의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및 기관 대표(사업단의 경우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)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,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
 - ※ 기업에서 자체 고용된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의무가입 되어있어야 하며,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
 - ▷ 조직설립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야 함
 - ※ 1개월은 조직설립일(N일)을 기점으로 하여 익월 기점의 전일(N-1일)까지로 함
(예) 조직설립일이 2월12일인 경우 만 1개월이 충족되는 날은 3월11일

○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목적으로 사용

-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
-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
 - ※ 상기 요건은 상법상회사외에 영농조합, 농업회사, 협동조합, 사립박물관·미술관, 전문예술법인·단체 등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모든 조직에 적용

□ 지정기간

- 지정일로부터 1년간 (최대 3년간)

※ 1년차 지정기간 종료 전월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 1년 연장 여부 결정

□ 지정혜택

-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

※ 일자리창출사업(인건비 지원)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지원 (예비사회적기업 지정 ≠ 재정지원)

-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

- 예비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물품·서비스 우선구매 권고

□ 지정규모
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관 수 : 특별한 제한규정 없음

- 단,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및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지정

※ 2012년 제1차, 제2차의 경우 각 30개 내외 기업 지정

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

□ 모집공고

- 공고일자 : '13.03.11

- 공고내용 : 지정조건, 제출서류, 심사절차 및 방법, 지원계획, 요건 및 절차 등

- 공고방법 :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(www.se.seoul.go.kr) 및 자치구 홈페이지

□ 신청접수

- 접수기간 : '13.03.11~03.29 (3주간, 18:00까지)

- 접수처 : 각 기관(본사)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 및 접수

- 접수방법 : 직접 및 우편접수 (마감일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)

3 심사 및 지정

□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

- 현장실사는 서류상 요건충족 기관 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시
- 자치구(중간지원기관 포함)에서 작성한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검토보고서(붙임2)에 필수 지정요건이 미충족된 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대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서 제외

□ 심사위원회 심사

- 위원회 구성 : 심사일정에 맞추어 추후 별도 구성
 - 소위원회는 필요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
 - ※ 위원회는 반드시 사회적기업지원기관 소속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
- 심사기준 : 사업내용의 우수성, 기업의 견실성,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,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

심사항목	주요심사사항
사업내용의 우수성	○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평가 ○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, 타당성, 우수성 등
기업의 견실성	○ 기업의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 ○ 기업의 재무건전성(자본금, 부채비율 등) 평가
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	○ 재정지원 없이 지속적 고용유지가 가능한지 여부
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	○ 인증계획의 실현가능성, 타당성, 우수성 등

□ 심사방법

- 서면심사(신청기관의 제출서류,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), 대면심사
 - 소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,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 가능
 - ※ 기타 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심사방침 수립시에 정함

예비사회적기업 지정

○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정공고 및 지정서 발급

〈 지정절차 〉



IV 추진일정

- 모집공고 : '13.03.11(월)
- 신청접수 : '13.03.11(월)~03.29(금)
- 서류심사(요건심사) : '13.04.01(월)~04.03(수)
- 현장실사·검토보고서 작성 : '13.04.04(목)~04.17(수)
- 검토보고서 송부 : '13.04.19(금)
- 소심사위원회(대면심사) 심의 : '13.04.29(월)~05.03(금)
- 심사위원회 심의 : '13.05월 초
- 지정(공고) 및 지정서 발급 : '13.05월 초

- 붙임 1. 공고문(안) 1부.
 2.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양식 1부. 끝.